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제정 1973. 7. 1. 훈령 제 12호	일부개정 2004. 12. 10. 훈령 제453호
개정 1973. 9. 26. 훈령 제 19호	일부개정 2005. 4. 13. 훈령 제466호
개정 1973. 11. 2. 훈령 제 20호	일부개정 2006. 3. 16. 훈령 제475호
개정 1974. 6. 20. 훈령 제 26호	일부개정 2007. 2. 5. 훈령 제490호
개정 1975. 10. 1. 훈령 제 35호	일부개정 2008. 8. 27. 훈령 제507호
개정 1976. 7. 27. 훈령 제 46호	일부개정 2009. 7. 28. 훈령 제535호
개정 1977. 2. 14. 훈령 제 51호	일부개정 2010. 2. 11. 훈령 제546호
개정 1978. 1. 31. 훈령 제 55호	일부개정 2010. 11. 2. 훈령 제555호
개정 1980. 1. 25. 훈령 제 94호	일부개정 2011. 2. 28. 훈령 제561호
개정 1982. 8. 5. 훈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1. 12. 29. 훈령 제575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83. 9. 14. 훈령 제132호	일부개정 2012. 2. 1. 훈령 제576호
개정 1984. 6. 7. 훈령 제138호	일부개정 2012. 8. 7. 훈령 제58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85. 11. 15. 훈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4. 4. 10. 훈령 제612호
개정 1987. 1. 19. 훈령 제149호	전부개정 2017. 2. 10. 훈령 제665호 (제명개정)
개정 1989. 5. 23. 훈령 제170호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0. 1. 22. 훈령 제185호	일부개정 2018. 4. 4. 훈령 제68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0. 5. 24.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8. 11. 16. 훈령 제690호
개정 1990. 11. 23. 훈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2. 5. 13. 훈령 제209호	일부개정 2020. 7. 10. 훈령 제7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면개정 1992. 10. 15. 훈령 제212호	일부개정 2022. 1. 10. 훈령 제73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3. 1. 21. 훈령 제214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3. 6. 1. 훈령 제218호	일부개정 2023. 3. 22. 훈령 제740호
개정 1993. 8. 24. 훈령 제225호	일부개정 2023. 11. 22. 훈령 제745호
개정 1994. 6. 28. 훈령 제242호	
개정 1995. 5. 19. 훈령 제264호	
개정 1996. 2. 29. 훈령 제287호	
개정 1996. 7. 5. 훈령 제297호	
개정 1997. 1. 24. 훈령 제309호	
개정 1997. 8. 7. 훈령 제319호	
개정 2000. 4. 19. 훈령 제385호	
개정 2000. 11. 29. 훈령 제401호	
개정 2003. 9. 3. 훈령 제4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의 실·국·소·원장, 실·과장 및 구의 과장에게 동 지원 담당을 지정하여 동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제2조(담당) 안양시의 실·국·소·원장, 실·과장 및 구의 과장(이하 “동담당관”이라 한다)의 지원 담당 동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름철 호우 및 태풍 시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5., 2023. 3. 22.>

제3조(지원) ① 동담당관이 담당 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최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동담당관이 특별지시를 받아 담당 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결과 보고 등) ① 동담당관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담당관이 동 지원업무 시 동 행정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동장 협조) 동장은 제3조에 따른 동담당관의 동 지원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직원 동참) 동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동담당관의 소속직원을 동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양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2. 10. 훈령 제665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18. 4. 4. 훈령 제68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18. 4. 4. 훈령 제682호> 참조]

부칙 <2018. 11. 16. 훈령 제6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참조]

부칙 <2020. 7. 10. 훈령 제7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0. 7. 10. 훈령 제712호> 참조]

부칙 <2022. 1. 10. 훈령 제73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2. 1. 10. 훈령 제731호> 참조]

④ 생략

부칙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참조]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부칙 <2023. 3. 22. 훈령 제7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2. 훈령 제745호>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1. 22.>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제2조 관련)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구
	실·국·소·원	과·담당관	
만 안 구 (14)	안양1동	복 지 문 화 국 장	복 지 정 책 과 장
	안양2동		노 인 복 지 과 장
	안양3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안양4동		위 생 정 책 과 장
	안양5동		여 성 가 족 과 장
	안양6동		문 화 관 광 과 장
	안양7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안양8동	도 시 주 택 국 장	주 택 과 장
	안양9동		건 축 과 장
	석수1동		도 시 재 생 과 장
	석수2동		도 시 계 획 과 장
	충 훈 동		도 시 정 비 과 장
	박달1동	하 천 녹 지 사 업 소 장	신 성 장 전 략 과 장
	박달2동		시 설 공 사 과 장
동 안 구 (17)	비산1동		공 원 관 리 과 장
	비산2동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녹 지 과 장
	비산3동		생 태 하 천 과 장
	부 흥 동	안 전 행 정 국 장	수 도 행 정 과 장
	달 안 동		수 도 시 설 과 장
	관 양 동		하 수 과 장
	인 덕 원 동		홍 보 기 획 관
	부 릴 동		총 무 과 장
	평 촌 동	도로 교통 환경 국 장	체 육 과 장
	평 안 동		청 년 정 책 관
	귀 인 동		시 민 봉 사 과 장
	호 계 1동		정 보 통 신 과 장
	호 계 2동		대 종 교 통 과 장
	호 계 3동		철 도 교 통 과 장
	범 계 동		스마트 도시 정보 과 장
	신 촌 동	기 획 경 제 실 장	환 경 정 책 과 장
	갈 산 동		기 후 대 기 과 장
			고 용 노 동 과 장
			기 업 경 제 과 장
			정 책 기 획 과 장

[별표 2] <개정 2023. 11. 22.>

여름철 호우 및 태풍 시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제2조 관련)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구
	실.국.소.원	과·담당관	
만 안 구 (14)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위생정책과	민원봉사과장
		여성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세무과장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홍보기획관	복지문화과장
		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정비과장	
		신성장전략과	
동 안 구 (17)	하천녹지사업소장	시설공사과장	건축과장
		총무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교통녹지과장
		예산법무과장	
		수도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세정과장	
		-	민원봉사과장
	안전행정국장	-	
		체육과장	세무과장
		청년정책관	
		시민봉사과장	
		-	
	도로교통환경국장	대중교통과장	복지문화과장
		철도교통과장	
		-	
		-	
	기획경제실장	고용노동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업경제과장	
		정책기획과장	건축과장
		-	
		-	
		정수과장	교통녹지과장
		-	
		-	
		-	
		-	